
입 법 정 보

2018-8호



목 차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
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4
3.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안전부).....	6
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7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7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8
7.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8
8. 국제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9
9. 국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
10.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1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
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5.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3
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3
1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5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6
1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7
2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8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9
2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5.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2
2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2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2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24
3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5
3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5
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6
3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7
3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7
3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9
3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40.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1
4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33
4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48.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인사혁신처).....	37
49.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소방청).....	39
5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9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0
5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1
5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41
5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3
5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3
5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4
5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4
5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5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5
6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46
6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6
6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7
6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7
6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8
6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49
66.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9
6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9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50

정부입법 예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4. 16. ● 마감일자 : 2018. 5. 28.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48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정폭력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 등에 대한 신고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 나. 특별자치시장 근거 조항 신설에 따라 지자체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 * (현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 예고일자 : 2018. 4. 16. ● 마감일자 : 2018. 5. 28.
- 수시보고 조문 제목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고,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의 대상·절차·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감사원 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하며, 재심의 청구 대상을 처분요구 외에 권고·통보사항까지 확대하여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자체감사기구 등 파견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세무서장 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변상판정 집행위탁 기관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2항, 제17조의3,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5제3항)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임면(任免)” 이 “임용” 으로 개정(2004. 6. 12. 「국가공무원법」 시행)되고, 대통령의 임용권 중 3급부터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2008. 6. 27. 「공무원임용령」 시행)된 것을 반영함

2) 고위공무원단의 적격심사제도가 강화(2014. 4. 8. 「국가공무원법」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적격심사 기준도 강화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장을 감사원장에서 감사원장이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함

3)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 보완(안 제4조제3항)

1) 감사원 운영공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에 기존의 사고(事故) 외에 궐위(闕位)를 추가함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7. 4. 1. 시행)됨에 따른 정비(안 제7조제4호, 제28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50조의2)

1) 법률 적용상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개정함

라. 수시보고 조문 제목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고,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의 대상·절차·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원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안 제12조제1항 제9호, 제42조)

마.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자체감사기구 등 파견의 근거조항을 마련(안 제18조의3)

바. 변상채권의 강제징수 위탁기관 확대(안 제31조)

1) 변상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에게만 강제징수를 위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변상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되는 등 변상채권 강제징수가 간편해 지고, 변상책임의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1)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권고·통보를 재심의 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변상책임의 판정만 직권 재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모든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로 확대함

2)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감사대상기관 등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감사원 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안 제43조제1항)

3.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4. 17.
- 마감일자 : 2018. 5. 28.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요건

1)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을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4. 17.

• 마감일자 : 2018. 5. 31.

- 현재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불리지역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미만 떨어진 도서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이하이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 등을 조건불리지역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업생산성이 낮은 도서와 일반 어촌지역과의 격차를 보전하여 어촌지역주민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육지와 이격거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도서 지역 거주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

- 1)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도서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그 중에서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4. 18.

• 마감일자 : 2018. 5. 2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 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신청,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와 공통서식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4. 18.
- 마감일자 : 2018. 5. 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 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 나. 보건위생 물품 지원대상 청소년의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 다. 보건위생 물품 지원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

7.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18
- 마감일자 : 2018. 5. 8.
-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안 제2조)
 - 1) 소득 산정 시, 다자녀, 맞벌이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액 등을 제외하도록 정함 (안 제2조 제1항)
 - 2)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재산의 종류별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2조제2항)
 - 3)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나. 대리인 (안 제4조)

- 1)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으로 정함

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안 제5조)

-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하나의 간이 서식으로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아동수당의 지급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안 제7조)

-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안 제8조)

- 1) 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등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규정

8.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4. 18.
- 마감일자 : 2018. 5. 28.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징수유예를 최대 2년까지 허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항).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4. 18. • 마감일자 : 2018. 5. 28.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10.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4. 18. • 마감일자 : 2018. 5. 11.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개정안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신설 및 관련 규칙 개정(안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7조)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18. • 마감일자 : 2018. 5. 28.
-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한 보고기준 및 보고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동 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부품 관련 조항의 문구수정 및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약칭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정보 보고범위 및 보고방법 규정
(안 제26조의3, 별지 제102호, 별지 제102호의2, 별지 제102호의3 신설)

- 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정보, 교통사고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고방법을 명시

나. 대체부품 관련 조항 수정(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40조의14)

- 자동차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수정하고, 자동차부품 성능 품질 인증기관을 대체부품 성능 품질 인증기관으로 수정.

1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4. 18.
- 마감일자 : 2018. 5. 28.

○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신설)

○ 주요내용

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4. 19.
- 마감일자 : 2018. 5. 29.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 ·

폐지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看做)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5453호, 2018.3.13 공포, 2018.9.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5 제2호)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4. 19. ● 마감일자 : 2018. 5. 19.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의 조사·평가사항을 규정하여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만 그 위탁 제조사실을 표시토록 규정하며,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26조)

나.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9)

- 법 제18조·제23조·제24조·제2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통전문 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다.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 함(안 별표 9)

- 라.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하였으나,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만 표시토록 규정함(안 별표 4)

15.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4. 19. • 마감일자 : 2018. 5. 2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료검사 및 시료수거,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제조업체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 사료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료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 위임 (안 제7조제1항 신설)
 -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사항
 -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통보 및 재검정 의뢰·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제조업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4. 19. • 마감일자 : 2018. 5. 31.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의 변경(안 제5조)

-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우회상장, 합병상장 포함) 외(外)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회사(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나.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범위 확대(안 제8조제3항)

-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금융회사를 추가

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할 항목 확대(안 제9조제2항 각 호)

-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하는 항목으로 감사 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

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안 제14조 제1항, 3항, 5항2호·4호·제9호)

- 새로운 지정사유로서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미이행,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등을 추가

마.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추가(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 회사의 자료제출 협조가 되지 않아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

바. 회계법인 수시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할 항목 신설(안 제28조제3항)

-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타난 경우, 회계법인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 보고해야할 항목을 신설

사.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 공개범위(안 제34조)

-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 사항 및 미이행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두 공개
- 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의 운용수익금 반환 금지(안 제41조제4항)
-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 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 반환 금액에 추가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제외

1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4. 19
- 마감일자 : 2018. 5. 29.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

- '18.1.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 지원규정 개정(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단서 조항 삭제)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정한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인원 제한

- 채용 예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훈련의 대상인원을 기업규모별로 제한하되, 소규모·신설 사업장은 채용지원을 위해 한도를 확대하여 채용 예정자 직업훈련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제공 미신고에 따른 추가징수 범위 설정

-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한 경우 지급 제한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분화하고자 함.

라. 조문정비

- 제도 개선에 따라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마. 별지서식 정비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2018년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 소분류 직종현황표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 18.1.1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되는 사람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 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개정)

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1일 소정 근로시간 누락 방지 및 이직확인서 진행상황 통지 등을 위한 이직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을 약정 취업률(훈련종료 후 3개월)에 따라 차등이 가능하도록 훈련지원금 신청서 서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사회보험 공통 신고서식의 용어 통일(띄어쓰기), 타 사회보험 신고서식 변경내용 반영 등 서식 정비하고자 함.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4. 19.
- 마감일자 : 2018. 5. 29.

○ 주요내용

가. 초단시간 노동자 당연가입 요건 개선

-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근무하면 고용보험적용대상이나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 기준이 없어 총 근속기간이 일정정도 이상이고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 확대

- 사업주가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되는 훈련비의 경우 연간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이 충분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여 기존 지원한도액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대상 유급휴가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 경우 훈련비까지 지원한도액 적용이 제외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개선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이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 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초기 3개월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부가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상한을 150만원까지 상향 지급 하던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이른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특례 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통상의 육아휴직급여보다 소득보전을 강화하고자 함.

1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4. 20.
 - 마감일자 : 2018. 5. 30.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이라 함) 설립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8. 3. 20. 공포,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운영 등, 승인·보고 사항,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전성 조사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 연구기관 중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변경 (제4조(안전성 조사의 절차 등)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제1호 수정)
 - 나. 제품안전협회의 불법·불량제품 조사 수행자의 증표 관련 조항을 삭제(제23조(불법·불량제품조사수행자의증표) 삭제)
 - 다. 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제6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제23조(정관), 제23조의2(조직), 제23조의3(운영) 신설)
- * 정관(목적, 업무, 회계, 임원, 직원 등), 이사회, 감사, 직원 임면 등
- 라. 관리원의 불법·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관련 사항 규정 및 해당 별지 서식 변경(제23조의4(불법·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신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관련 사항 수정)

마.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이 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보고해야 할 세부 사항 및 절차*를 규정 (제23조의5(승인 및 보고 등) 신설)

* 승인 :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 등, 보고 : 세입·세출의 결산, 사업실적 등

바.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3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제23조의6(관리 및 감독) 신설)

* 필요사항 보고, 자료 제출, 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을 검사 등

2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20.
- 마감일자 : 2018. 5. 30.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m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이 금연구역으로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면적기준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법령해석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인 별표 2의 경과규정 삭제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의 금연구역 면적 기준을 단계별로 지정

- 75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소는 ‘18.7.1.부터, 모든 영업소는 ‘19.1.1.부터 실시(제6조제2항 신설)

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금연구역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인용조문 개정 사항 반영(제6조제3항 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 → 「도로법」 제2조제2호

다. 신규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규정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 설치 방법” 도 기존 금연구역 內 설치기준 및 방법 준용
(제6조제4항 개정)

라. 법령해석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별표 2의 경과규정) 삭제
및 기타 인용조문 정비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0.

• 마감일자 : 2018. 5. 30.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취소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무상수리 계획의 세부내용과 통지 방법을 정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를 알리는 사유와 세부적인 통보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무상수리 계획의 세부내용 및 통지방법 규정(안 제49조의7 신설)
 -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의 과정,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 원인 및 수리방법 등이 포함된 무상수리 계획을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우편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사실 통보 사유 및 방법 규정(안 제89조의2 신설)
 - 지정정비사업자가 안전에 직결되는 12개 사유로 지정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 시점에서 역산하여 6개월 내에 해당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당

사실을 통보

다. 불편규제 완화(안 제113조, 제120조, 제121조, 제143조)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법원의 확정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과 사무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자동차관리사업 사무 관련 서류를 전산기록장치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라. 매매중사원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123조의2 신설)

- 매매중사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무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등을 규정

2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0.
- 마감일자 : 2018. 5. 30.

○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 자동차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여 부과함

나.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3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0.
- 마감일자 : 2018. 5. 3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5312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경로 안내 장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신설하며,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시 수동 경사판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안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신설)
- 나.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규정을 현행 자동경사판에서 경사판으로 수정(별표 1 제1호가목4)가))
- 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별표 1 제1호가목6)가))
- 라.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정비(별표 1 제1호가목2)가), 제1호가목3)가) 및 나) 등)
- 마.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의 하나인 보행경로 안내장치에 대한 구조, 시설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별표 2 제6호 신설)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0. • 마감일자 : 2018. 5. 3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4941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지정시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보행우선구역 지정협의체의 구성, 업무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 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안 별표 1, 별표 2)

25.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0. • 마감일자 : 2018. 5. 30.
-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차용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4. 23. • 마감일자 : 2018. 6. 4.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 변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50호, 2018. 3. 13. 공포, 2018.9. 1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에 대한 신고 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나. 관련조문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상담소 등 폐지·휴지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므로 별지서식 중 처리기간에서 ‘즉시’ 문구 삭제, 변경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목록 명확화 등)

2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3.
- 마감일자 : 2018. 6. 4.

○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시·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과 차량 운행중지 명령 등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 반영(안 제2조의6, 제2조의7 및 별지 제19호 서식, 제20호서식 개정)

나.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안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3.
- 마감일자 : 2018. 6. 4.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고,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 정책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개정(안 제31조 등 개정, 제51조제1항 삭제)
- 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사업정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과징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되도록 개선(안 제52조제1항관련, 별표3 개정)
- 다. 위험물질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태료부과 등 시·도지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 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 마. 우수물류기업 인증 관련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개선(안 제55조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2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3.
 - 마감일자 : 2018. 6. 4.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사업의 승계 신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 등의 민간위원의 경우 수뢰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물류기본계획 심의 및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의 심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승계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하는 간주제 신설(안 제45조제4항 신설)
- 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 등 정부행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심의·의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형법 등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개정(안 제70조 개정)

3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4. 24. • 마감일자 : 2018. 6. 4.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위를 현행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4. 24. • 마감일자 : 2018. 6. 4.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행정 효율화 및 국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0호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무부령 제868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4. 24.

● 마감일자 : 2018. 6. 4.

○ 시행 규칙에 명시된 기관(단체)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현행으로 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해외시장진출 사업의 위탁·대행에 있어 영 제28조제6호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의7)

3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4.

● 마감일자 : 2018. 6. 4.

○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허가 축사 등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10조의2를 적용하여 적법화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및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추가(안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개정)

3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4. 25. ● 마감일자 : 2018. 6. 5.
- 2018.2.21.자로 공포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539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 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4항)
 -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3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4. 25. ● 마감일자 : 2018. 6. 5.
- 2018.2.21.자로 공포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539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연휴양림 내 음식점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연휴양림의 유원지화를 방지하고 동시에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영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문화 휴양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2)
 - 산림문화 휴양발전 지역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하고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등에 대한 사항은 산림

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한 사항을 자연휴양림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한다. 등산 트레킹학교가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체험료 징수 규정 신설(안 제11조9)

- 등산 트레킹학교가 시설사용료, 체험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등산·트레킹학교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립 등산·트레킹학교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자연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명확화(안 제7조제2항제3호)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수량은 각각 1개소 이내로 하며 시설면적은 개소별로 연면적 200㎡이하로 하되,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닌 ‘바닥면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3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25.

• 마감일자 : 2018. 6. 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에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토록 되어 있어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비급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1 제1호다목 삭제)

나. 저신장(왜소증) 급여 개선에 따라 관련 비급여 규정 개정(안 별표 2 제2호)

3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25.

• 마감일자 : 2018. 6. 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16. 공포. ‘18.7.1. 시행) 사항 중 임의계속 가입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시행) 으로 “한국회귀의약품센터”가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저신장(왜소증) 급여기준 개선,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한국회귀의약품센터”를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안 제12조1항, 제13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58조, 별표 4,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5호서식)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제1항)
- 다.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9호의4서식)
- 라. 장애인보장구 품목별 급여기준, 절차 재정비와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용어 단순화 및 정비(안 제26조,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 마.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신요법료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을 산정시 10%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3 제1호)
- 사.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한 규정 삭제(안 별표6 제1호 라목)

3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25.

• 마감일자 : 2018. 6. 24.

-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 (안 제18조의2, 별표 4의2)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개정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적용 기준을 마련함

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시 청문 개최 규정 삭제 (안 제18조의3)

- 개정 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청문 개최 규정을 삭제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0조의4, 제71조, 제75조의2, 별표 4의2)

- 개정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

3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25.

• 마감일자 : 2018. 6. 4.

-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 압류 예정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때 시행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사유를 마련하고, 재난으로 인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경우 종전의 임의계속가입 잔여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및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등에 따라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를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함(안 제20조, 별표 2, 별표 5)

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기준 마련(안 제46조의5)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하기 전 압류 예정 사실 등에 대한 통보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라.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사목)

-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
- 2) 65세 이상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본인 부담비용 인하(안 별표 2 제3호 파목)

40.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25.
- 마감일자 : 2018. 6. 5.

○ 「모자보건법」(법률 제15444호, '18.3.13. 개정, '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등과 관련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사항 및 공표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와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 위반사실의 구체적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나.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후조리원의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게시)에 6개월 동안 게시 등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
- 다. 의료기관 이송 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별표 3)

4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5.
- 마감일자 : 2018. 6. 4.

- 최근 다양한 초소형 삼륜형 또는 사륜형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조향방식 규제 때문에 원형 핸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원형 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삼륜·사륜형 전기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규칙 별표1)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승용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륜차로 분류함

4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4. 26.
- 마감일자 : 2018. 6. 8.

- 무인도서(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에 대해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사업 및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를 허용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절대보전 준보전 등 무인도서 행위제한 개선(안 제12조의2 신설 등)

- 1) 현행규정은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도서에서 토지형질 변경, 시설물 설치, 동 식물 포획 채취 등 금지에 대한 예외로 재난구호, 군사행위만을 규정함에 따라 표지판, 정보수집장치 등 관리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 및 훼손된 무인도서의 복원 등 공공목적의 사업도 시행 불가
- 2) 표지판, 무인 정보수집장치 등 최소한의 관리시설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예외규정을 추가하고, 산책로 설치, 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 및 기존 건축물 개 보수 등 현재 이용수준 유지를 위한 최소 행위에 대한 허가 규정 신설
- 3)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목적 사업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 및 합리화 제고

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이의 변경신청 절차 정비(안 제11조)

-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신청 절차가 이중으로 규정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
 - 2) 중복된 절차를 변경신청 절차로 일원화하여 명확한 법 체계 마련
- 다. 그 밖에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정(안 제5조 등)

4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4. 26.
- 마감일자 : 2018. 5. 8.

-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3)

4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6.

• 마감일자 : 2018. 6. 5.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제10조제2호 삭제)

-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16.2.3. 개정, ' 18.2.4.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주기적 신고사항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삭제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분강화 (안 별표 6)

-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강화

다.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안 별표 7)

-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300만원)

라. 시행령 위임근거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시행령 제36조제2항)

- 건축주 직영시공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7.12.26. 공포, ' 18.6.27. 시행)에 따라 주거용 외 건축물 중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 개정 조항 맞추어 변경

4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4. 26.

• 마감일자 : 2018. 6. 25.

-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측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 충돌시 사상자 감소를 위해 부분정면 충돌 및 기동측면충돌 기준 도입과 함께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 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띠 설치기준과 이륜자동차 제동장치 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최저지상고 기준 완화 및 물품적재장치·창유리 재질의 다양화 등
(안 제4조, 제5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별표 33)
 -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기준에 맞추어 완화하고,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 배기관 열림방향 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디자인 및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나. 가변측 설치기준 개선 및 반사띠 설치기준 도입(안 제13조, 제49조, 별표 32의2)
 -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측이 축의 하중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승강조작이 되도록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띠 설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국내에 도입하고자 함
- 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출력 오차 및 제동장치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제67조, 별표 5의13)
 - 이륜자동차 원동기를 내연기관과 구동전동기로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출력오차범위를 자기인증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이륜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의 설치 의무화를 통한 안전도 확보와 함께 연동제동장치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자 함
- 라. 충돌기준의 국제기준 조화(안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02조, 별표 11의3, 별표 11의5, 별표14, 별표 14의2)
 - 자동차 충돌 시 피해감소는 물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동측면충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4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4. 26. • 마감일자 : 2018. 6. 7.
-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 2018년 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영향평가 기술지원의 근거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으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제시 (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
 - 나.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재검토 의무화 (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
 - 다. 국가기관 등은 예산편성 단계, 발주 단계 그리고 그 외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하는 평가절차·방법 명시 (안 제12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신설)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안 제12조의2 제6항 신설)

4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8. 4. 27. • 마감일자 : 2018. 6. 7.
-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43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2 신설)
- 나. 변경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국민 고시 근거 마련(안 제3조)
-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 기관에 협조 요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48.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4. 27.
- 마감일자 : 2018. 5. 28.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인사관리 관련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사전적 예방을 통한 양성 평등한 근무환경 및 문화조성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안 제3조)

- 1)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따름

나. 신고 절차 등(안 제4조)

-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임용권자 등에게 인사상담 또는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실시하며, 임용권자 등은 정보 누설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2)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임용권자 등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 등은 신고할 수 있음

다.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안 제5조)

- 1)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전보 등 격리 조치를 취하여야 함
- 2)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전보, 교육훈련,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안 제6조)

- 1)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 징계 의결 및 처분, 보직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7조)

- 1) 임용권자는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징계처분, 승진·성과평가·교육훈련,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바. 임용권자 등의 의무(안 제8조)

- 1)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 실시 및 자체 계획 수립 등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등 자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 등이 부담함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사.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인사 감사(안 제9조)

- 1)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계 있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하여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기관의 장에게 시정 및 관계 공무원의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49.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4. 27. • 마감일자 : 2018. 6. 7.
- 임시현장응급의료소 및 임시영안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증도분류표와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건소장 도착 전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1항)
 - 나. 다수 사망자 발생시 임시영안소 운영 규정 마련(안 제20조제4항)
 - 다. 보건소장 도착 전 업무대행자로 구급대장 등 추가(안 제20조제5항 제4호)
 - 라. 보건소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 사상자 분류·응급처치·이송, 응급의료자원관리, 사상자 현황 파악 등 의료소 전반 지휘·감독
 - 마. 중증도분류표 및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 변경(별표7 및 별지제2호 서식) 등 5개 항목 개선

5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4. 27. • 마감일자 : 2018. 6. 7.
-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
 -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

- 1)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종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2)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상급종합병원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4. 30.
- 마감일자 : 2018. 6. 11.

○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장 및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5527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승객 안전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정하는 한편,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안 제13조의2 신설)

- 1)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 법률 제15527호, 관보 제19222호(2018. 3. 27.)

- 2) 승객 안전 매뉴얼을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총 톤수 5톤 이상, 총 톤수 5톤미만 중 승객정원 13인 이상 선박 등

나. 승객 신분확인 방법(안 제20조제4항)

- 1)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같은 법 제25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신분증 확인,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및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대표자 확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5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4. 30. ● 마감일자 : 2018. 6. 11.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5545호, 2018.3.27. 공포, 2018.9.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함(제명 등)
 -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단서신설)

5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4. 30. ● 마감일자 : 2018. 6. 11.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나고야의정서)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17.8.17)됨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와 일치

시키려 함. 또한,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명
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 주요내용

가. 유전자원법 제정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의10호, 제2의11호, 제2의12호, 제2의13호 신설)

- ‘농업전통지식’, ‘접근’, ‘이용’, ‘이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익의 공유 조항 신설(안 제8조 신설)

-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농업유전자원
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도록 함

다. 유전자원법에서 부여한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의 역할 부여
(안 제14조2항)

-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처리 및 이익의 공유 등에 관
한 사항
- 해외 농업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절차 준수 처리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농업생명자원 연구·
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 정부의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신설함
-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에 관하
여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5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 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5. 1.
- 마감일자 : 2018. 6. 11.
-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548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5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5. 1.
- 마감일자 : 2018. 6. 12.
- 디자인등록증의 휴대·관리 등 등록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의 발급근거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심판 청구이후 심판 방식심리 중에 심판청구 취하가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도 당사자, 참가인 등에게 심판청구 취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심판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에 접근하기 위해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접근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 출원서(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DM/1(E))의 우선권 주장서식이 개정되고, 헤이그 협정에 러시아, 캄보디아가 가입하는 등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출원서 서식 개정에 따라 이를 국내법의 국제출원서 서식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5. 1.
 - 마감일자 : 2018. 6. 11.
-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538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 등 신설
-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서 단년생 작물의 경작,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의 작물 재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한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의 용도로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5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5. 2.
 - 마감일자 : 2018. 5. 10.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중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함.

5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5. 3.
- 마감일자 : 2018. 6. 12.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취급시설 및 공정의 설계·배치·안전 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해당 자격·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여 인정하기 위함. 그 밖에 기술인력을 선임·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3.
- 마감일자 : 2018. 5. 23.
-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신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운영 시 손실 보상 범위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세부요건 규정 신설(안 제1조의6 신설)
 -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등급 및 절차 신설(안 제17조제1호)
 -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규정하고, 관련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 및 별표 1의4)
 - 라. 접촉자 격리시설의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범위 규정(안 별표 2의2)

6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5. 3.
 - 마감일자 : 2018. 6. 14.
- 농신보 동일인 한도는 ‘99년 설정되어, 그간 물가상승 영농규모 확대로 투자비용 영농비용이 증가한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
 - 주요내용
 - 가. 농신보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농림수산업자등 개인은 10억원→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20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의2제2항제1호)

6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5. 3.
 - 마감일자 : 2018. 6. 12.
-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 규정(안 제30조제2항 신설)
- 1)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규정
- 나. 특례업종 조정(안 제32조 삭제)
-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규정을 삭제
- 다. 기타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개정, 안 제22조제2항제5호 삭제)

6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5. 4.

• 마감일자 : 2018. 6. 14.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제 시행 중(법률 제3505호, 1981. 12. 31. 공포, 1982. 7. 1. 시행)이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과금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염소 삭제(제23조, 별표4, 5, 8, 9)

- 1) 초과배출부과금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함
- 2) 산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준 등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설정하되,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 3)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염화수소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염소 항목을 삭제함

나. 사업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배출량에 대한 조정방법 강화(제30조)

- 1)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20% 가산하도록 함(제30조)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36조의2 신설)

- 1)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6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5. 4.
 - 마감일자 : 2018. 6. 14.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66.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5. 4.
 - 마감일자 : 2018. 5. 11.
-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5년)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3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6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5. 4.
 - 마감일자 : 2018. 6. 14.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0조 제5항 제3호)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5. 4.

• 마감일자 : 2018. 6. 4.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2호, 2018.1.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 구체화(안 제9조의2)

- 1)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2) 이에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에 추가하여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안 제11조 신설)

- 1) 개정 법률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절차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2) 이에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조정절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